

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쳐보세요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도 참고자료	
		보도	2018. 10. 25. (목) 조간
담당부서	보험영업검사실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조정석 팀장(3145-7260), 황영률 부장(2262-6557), 이은혁 부장(3702-8610),	김동식 선임검사역(3145-7262) 김관철 팀장 (2262-6643) 최동욱 팀장 (3702-8620)

## 제목 : 금융꿀팁 200선 - ⑩ 보험대리점을 통한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하여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 동시에 2016.9.1일 개설한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에도 게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백번째 금융꿀팁으로, “보험대리점을 통한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을 별첨과 같이 안내해 드림

### 〈별첨〉 금융꿀팁 200선 - ⑩ 보험대리점을 통한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 과정에서 경험한 불합리한 금융관행 및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은 ‘금융관행 개혁 포털’ (<http://better-change.fss.or.kr>) 내 ‘국민 참여방’으로 제보 바랍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제 목	보험대리점을 통한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사례1)</b> 직장인 A씨는 <b>외부강사 B씨</b>로부터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았는데, 강사 B씨가 교육이 끝난 후 직장인에게 좋은 <b>저축성 보험상품</b>이 있다고 <b>가입을 권유하였음</b>.</li> </ul> <p>외부강사 B씨가 “○○금융그룹” 소속 직원이라고 하여 신뢰도 가지고 상품도 괜찮은 것 같아 청약서에만 자필서명하고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였고 보험상품도 저축성이 아니라 <b>보장성이었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사례2)</b> 전업주부 C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D씨가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보험을 <b>재설계(Remodeling)</b> 해 주겠다고 해서 상담을 받은 후 <b>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D씨가 권유한 종신보험에 가입하였음</b>.</li> </ul> <p>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새로 가입한 종신보험의 <b>보장내용</b>이 기존 종신보험과 <b>크게 다르지 않았고</b>, 오히려 기존 보험계약을 <b>중도 해지함</b>에 따라 손해만 보게 되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사례3)</b> 개인사업자 E씨는 <b>인터넷 광고</b>를 보고 알게된 ◇◇보험 대리점을 통해서 보험에 가입하려고 함</li> </ul> <p>그런데, ◇◇보험대리점이 <b>공식적으로 등록된 곳인지, 불완전판매는 어느정도 되는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실은 없는지 등 해당 보험대리점에 대한 기본 정보</b>를 알 수 있다면 그 내용을 보고 최종 결정하고 싶었으나 <b>그 방법을 몰라 답답하였음</b></p>

☞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경우 아래 5가지 유의사항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대리점을 통한 보험가입시 5가지 유의사항

- ① 보험가입시 보험회사의 심사를 받은 보험안내자료인지 확인하시고 보험대리점의 상호도 살펴 보세요.
- ② 모집종사자가 설명한 내용이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하세요.
- ③ 보험계약을 갈아타는 것은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세요.
- ④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 3개 이상의 보험상품에 대해 비교설명 받으세요.
- ⑤ 생.손보험회를 통해 보험대리점 등록여부 및 공시정보를 활용하세요.

- ① 보험가입시 보험회사의 심사를 받은 보험안내자료인지 확인하시고 보험대리점의 상호도 살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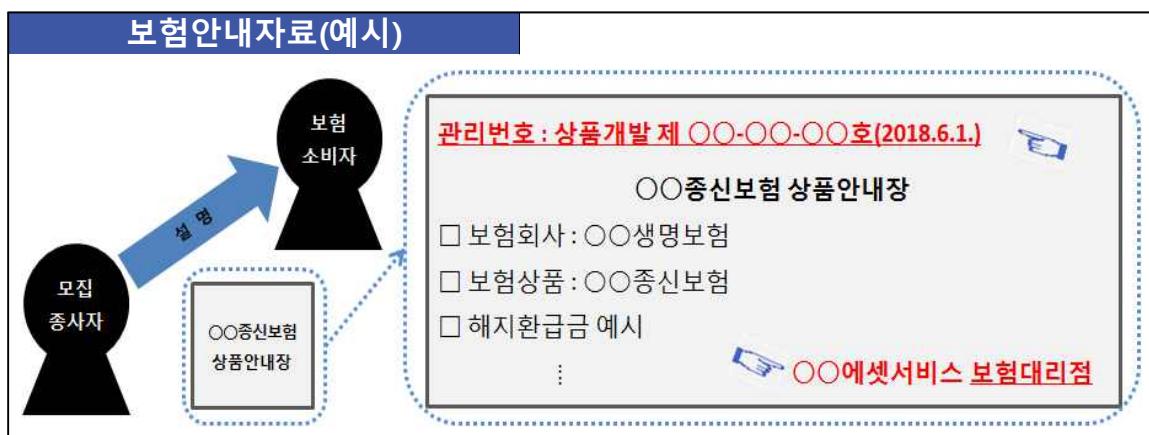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이하 '모집종사자')는 보험모집을 위하여 **보험안내자료**(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안내자료는 보험소비자가 보험가입을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보험소비자에게 충분하고 비교 가능한 상품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험대리점이 자체 제작한 보험안내자료**의 경우, **보험회사의 심사를 거쳐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후 사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보험안내자료에 보험회사의 관리번호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모집종사자로부터 해당 보험안내자료를 통해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험소비자가 **상호만**으로는 **보험대리점**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보험대리점이 **보험안내자료**에 상호를 사용할 때에는 그 상호 중에 “**보험대리점**”이라는 글자를 명시\* 하여야 하므로 모집종사자의 소속 회사가 보험대리점인지 여부는 상호를 유념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예시 : (보험대리점 상호) “○○에셋서비스”  
→ (보험안내자료에 상호 사용시) “○○에셋서비스 **보험대리점**”



## ② 모집종사자가 설명한 내용이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하세요.

상품설명서는 보험소비자가 복잡한 보험약관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의 핵심내용**을 총정리한 자료입니다.

특히, **상품설명서**에는 보험소비자가 모집종사자의 인적사항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모집종사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보험상품의 종류를 오인하지 않도록 **상품설명서 표지에 저축성·보장성 보험 여부**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보험상품**을 설명한 자가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모집종사자와 일치하는지, 저축성 **보험**이라고 **설명**되었는데 **상품설명서 표지**에는 **보장성 보험**이라고 명시되어 있는지 등 실제 설명받은 내용과 **상품설명서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꼼꼼히 확인한 후 **서명**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모집종사자는 상품설명서 1부를 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잊지 마시고, 모집종사자에게 상품설명서 1부를 반드시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품설명서(예시)

#### <상품설명서 표지>

○○종신보험

○○○님을 위한 상품설명서

본 상품은 **보장성보험**이며,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 <상품설명서 본문>

○○종신보험

##### 1. 보험계약의 개요

보험회사

: ○○생명보험

모집자

: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 (연락처 : 010-1234-5678)

#### <상품설명서 내용에 대한 계약자 확인>

- 보험계약을 가입하면서 모집종사자에게 설명받으시고 이해하신 사항에 대하여 "확인"란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주요설명내용	확인
1	회사 및 모집종사자 정보,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계약의 개요	✓
2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및 보장내용	✓
...	...	

본 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보험계약자는 설명받은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모집종사자 확인 2018.7.7. 설계사 ○○○ (서명)  
보험계약자 확인 2018.7.7. 계약자 ○○○ (서명)

### ③ 보험계약을 갈아타는 것은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세요.

모집종사자가 기존 보험을 **재설계**(Remodeling)해 주겠다거나 새로운 보험상품을 소개하면서 **기존 보험계약을 갈아타도록 권유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기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만기 전에 해지하게 되면 **해지환급금**이 계약자가 납입한 **원금**(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는데, 이는 계약자가 납입한 원금에서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위험보험료)과 모집종사자에게 지급한 **수수료** 등 **계약체결**을 위해 **소요된 비용**(사업비)를 **공제한** 후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존 보험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고 같은 조건으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과거 및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계약전 알릴의무).

그런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가 많아지고 그간 건강상태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가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보험계약의 보험료보다 비싸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갈아타기 전에 **아래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기존 보험계약에서 부족하거나 과도한 보장사항이 있다면, 계약조건이 변경 가능한지 먼저 알아 보세요.**

일반적으로 보험계약 기간은 장기이므로 **계약자의 재정상황이나 원하는 보장내용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가입금액을 낮춘다든지, 보험종목을 변경한다든지, 기존 특약을 없애고 새로운 특약을 가입한다든지 등의 계약변경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별 또는 보험상품별로 변경되는 내용이 상이하고, 계약체결 후 단기간 내에는 보험종목 변경 등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험회사의 콜센터 등을 통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 계약조건 변경의 종류 >

1. **(보험가입금액 감액)**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계약의 보장금액을 줄이고 앞으로 납입할 보험료도 낮추는 방법. 다만, 이 경우 보장금액을 줄인 부분은 해지로 처리되어 일부 공제금액이 발생할 수 있음
2. **(보험가입금액 증액)** 앞으로 납입할 보험료를 늘리고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계약의 보장금액을 늘리는 방법. 다만, 보험상품에 따라서는 보장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거나 보장금액을 늘리는 것 자체가 불가할 수 있음
3. **(보험가입금액 감액 완납)** 앞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대신 보장금액을 낮추는 방법
4. **(보험종목 변경)** 보험가입 이후 보험수요(니즈)가 변경됨에 따라 계약 자체를 변경\*하는 방법. 다만, 보험상품에 따라 변경여부가 상이하고, 보험가입 이후 단기간 내에는 변경이 불가할 수 있음  
\* (예시) 재해 위주 보험 → 암보장 위주 보험, 순수보장성보험 → 만기환급형보험
5. **(특약 신규가입 및 해지)** 보험가입 이후 특약 신규가입 및 해지를 통해 원하는 보장내용을 신규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보장내용을 없애는 방법. 다만, 건강상태 등에 따라 특약 신규가입이 거절될 수 있고, 특약 해지시에는 일부 공제금액이 발생할 수 있음

**(둘째) 모집종사자는 새로운 보험상품 권유시 기존 보험과 신규 보험의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및 보장내용 등 주요 사항을 비교안내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시 제공되는 ‘비교안내 확인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보험계약을 꼭 알아타야 하는 것인지 꼼꼼하게 따져 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보험 vs 신규보험 비교안내(예시)

**<보험계약 이동에 따른 비교안내 확인서>**

보험계약 이동시 나이, 위험률 증가 등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계약 초기 사업비 공제로 인하여 해지환급금이 과소지급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의 비교설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는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타사 보험계약이 있거나, 향후 6개월 이내에 소멸 예정인 타사 계약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니오, 없습니다.

비교 항목	신규보험 계약	기존보험 계약
상품명	(무)○○○종신보험	(무)○○○종신보험
월보험료	143,000원	150,000원
해지환급금	-	230,000원
***	***	***

**④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 3개 이상의 보험상품에 대해 비교설명 받으세요.**

기본적으로 모집종사자는 소비자와의 재무상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상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모집종사자가 간혹 보험소비자의 이익보다 **모집수수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 위주로 권유**할 수 있으므로 제시된 보험상품 이외에 **평소 관심있게 지켜보던 보험상품**이 있다면 이에 대한 **비교 설명을 적극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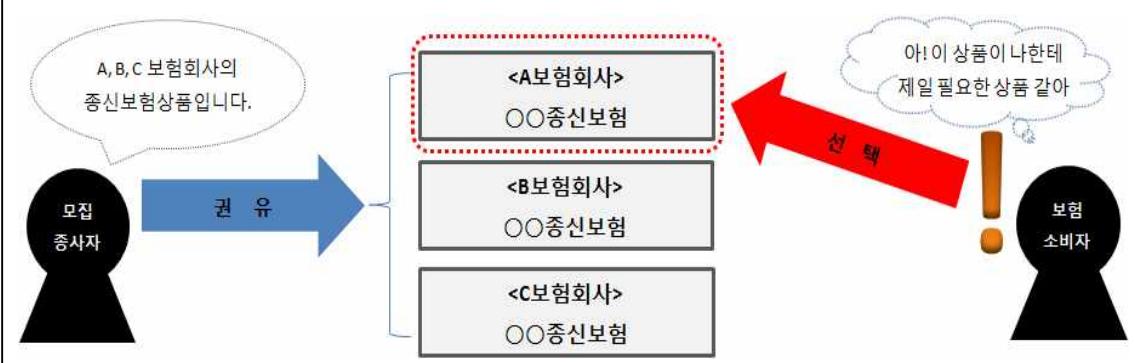
특히,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의 경우, 보험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을 보장하고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해서 보험소비자가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과 관련하여 **최소 3개 이상의 동종·유사 보험상품**\*에 대해 **비교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 비교가능한 상품이 3개 이상일 경우에는 3개 이상, 3개 미만일 경우에는 모든 상품을 말하며 비교대상 상품은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을 말함

\*\* (비교설명 항목 예시) ①보험금 및 지급사유, ②보험기간, ③보험료, ④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⑤해지환급금 관련 사항, ⑥재계약 관련 사항, ⑦해당 보험상품의 차별화된 특징 등

다만, **보험대리점은 모든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와 모집 위탁계약이 체결된 보험회사의 보험상품만 취급하고 있으므로 보험소비자에게 제시되는 보험상품들도 관련 보험회사로 국한됩니다.**

**3개 이상 보험상품 비교안내(예시)**



## ⑤ 생·손보협회를 통해 보험대리점 등록여부 및 공시정보를 활용하세요.

보험대리점 모집종사자와 상담을 해 보신 분들 중에서는 이 보험대리점이 공식적으로 등록된 곳인지, 정도(正道) 영업을 하는 곳인지 등 해당 보험대리점에 대해 한 번쯤은 궁금해 하셨던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몰라 그냥 궁금증에 그친 경우가 많으셨을텐데 이제는 생·손보협회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험대리점이 공식적으로 등록된 곳인지 여부는 생·손보협회 홈페이지의 “모집종사자” 코너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등록번호, 대리점명, 대표자명, 또는 주소 등을 검색조건으로 하여 등록되어 있는 개인 및 법인 보험대리점 전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보험대리점 등록여부 확인방법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http://www.klia.or.kr) → ‘모집종사자’ → ‘모집종사자 관련 안내 및 조회’ → ‘보험대리점 등록조회’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http://www.knia.or.kr) → ‘모집종사자’ → ‘보험대리점 조회’

아울러, 보험대리점의 기본정보는 생·손보협회 홈페이지의 “공시실” 코너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인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생·손보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반기별로 기본정보를 공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 보험대리점의 규모별로 공시내용을 차등화하고 있는데, 모든 법인 보험대리점은 설계사 현황, 불완전판매비율 등을 공통으로 공시하고,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은 재무·손익현황, 최근 5년간 제재실적 등 추가 정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 보도자료 참고 : 보험설계사.GA 관련 정보, 이제 투명하게 보여드립니다.(18.10.5.)

### 보험대리점 기본정보 확인방법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http://www.klia.or.kr) → '소비자' → '공시실' → '법인대리점 공사' → '공시조회'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http://www.knia.or.kr) → '공시실' → '법인대리점 공시' → '공시조회'

### 법인 보험대리점 공시내용

구 분	중소형(설계사 500명 미만)	대형(설계사 500명 이상)				
기초정보	①대리점명, ②등록번호, ③등록일					
일반현황	①본점 주소, ②연락처, ③임원 현황					
업무 범위 및 위탁계약 체결현황	①영위업무, ②영업범위, ③위탁계약 체결내역					
조직현황	①모집종사자 현황, ②지점 현황					
경영실적	<table><tr><td>①신계약건수 ②불완전판매(건수, 비율)</td><td>①신계약건수 ②불완전판매(건수, 비율)</td></tr><tr><td>-</td><td>③계약유지율 ④설계사 정착률 ⑤청약철회건수</td></tr></table>	①신계약건수 ②불완전판매(건수, 비율)	①신계약건수 ②불완전판매(건수, 비율)	-	③계약유지율 ④설계사 정착률 ⑤청약철회건수	
①신계약건수 ②불완전판매(건수, 비율)	①신계약건수 ②불완전판매(건수, 비율)					
-	③계약유지율 ④설계사 정착률 ⑤청약철회건수					
재무.손익현황	-	①재무현황, ②손익현황				
보험회사별.종목별 모집실적 및 수수료현황	-	①모집실적, ②수수료 현황				
최근 5년간 제재현황	-	①5년간 금융당국 지적내역				

## 참고1

##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 현황(2018.6월말 현재)

순번	대리점명	등록번호	주 소	모집인수(명)
1	지에이코리아주식회사	2009098136	서울특별시 종구 서소문로 89 11층(순화동, 순화빌딩)	14,485
2	(주)글로벌금융판매	200909127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1동 410호(문래동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3,499
3	프라임에셋(주)	2009058101	서울특별시 강진구 아차산로 563, 2층(광장동, 대한제지빌딩)	11,037
4	인카금융서비스(주)	2007121497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7길 27 서울숲코오롱디지털타워2차 2층 (성수동2가)	8,910
5	케이지에이에셋(주)	2009071004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14 2층(역삼동, 현죽빌딩)	8,034
6	메가(주)	200510800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4길 5 4층(역삼동, 삼흥역삼빌딩)	7,742
7	리더스금융판매(주)	2010098064	서울특별시 종구 소월로 10, 18층 (남대문로5가, 단암빌딩)	7,657
8	(주)엠금융서비스	200902802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0, 12층 (역삼동, 상경빌딩)	6,313
9	한국보험금융(주)	2004048143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7 14층(갈월동, 청룡빌딩)	4,766
10	(주)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2007078002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69, 19층 (서초동, 에이플러스에셋타워)	4,132
11	유퍼스트보험마케팅(주)	2001048024	서울특별시 종구 소월로 10 6층(남대문로5가, 단암빌딩)	3,739
12	피플라이프(주)	2004018025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 91 ,6층 (방배동, 구산타워)	3,269
13	주식회사 퍼스트에셋	2011038006	서울특별시 종구 소월로10 18층(남대문로5가, 단암빌딩)	2,609
14	더블유에셋(주)	200802809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94길 94 , 5층(역삼동, 케이피빌딩)	2,594
15	(주)리치앤코(Rich&Co.)	2006038313	서울특별시 종구 세종대로9길 41 , 올리브타워7층 (서소문동)	2,413
16	(주)비엠시금융서비스	201304803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71,9층 901호(당산동4가, 금강펜테리움아이티타워)	2,357
17	(주)프리미엄에셋보험대리점	201001801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68 13층(부전동, 에이원프라자)	2,082
18	(주)삼성화재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2016040013	서울특별시 종구 을지로 100 15층 (을지로2가, 파인애플)	1,936
19	(주)지에스홈쇼핑	20030983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75 (문래동6가)	1,836
20	(주)영진에셋	2005058036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3 15층(연산동, 경동빌딩)	1,815
21	서울법인재무설계센터(주)	200602836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천로 437 2층 (대림동, 원광빌딩)	1,769
22	(주)삼성생명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201505802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길 14 10층 (역삼동, 미림타워)	1,740
23	인코리아금융서비스(주)	201110014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7길 17 8층(삼성동, 승광빌딩)	1,687
24	우리라이프(주)	200709818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6 6층(잠원동, 우진빌딩)	1,662
25	(주)현대홈쇼핑	2003078112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70길 34 (천호동)	1,584
26	(주)에즈금융서비스	20121180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44층(여의도동, 쓰리아이에프씨)	1,568
27	(주)씨제이오쇼핑	1997020637	서울특별시 서초구 과천대로 870-13(방배동)	1,470
28	(주)아이에프씨그룹	2005018197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46 2층(양정동, 아이에프씨빌딩)	1,386
29	(주)에프엠에셋	2002031377	대전광역시 종구 계백로 1719 3층 2호(오류동 센트리아오피스텔)	1,320
30	에이원금융판매주식회사	2011100118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413 402호(송인동, 동보빌딩)	1,309
31	에스케이엠앤서비스(주)	2004048006	서울특별시 종구 퇴계로 385 11층 (홍인동, 준타워빌딩)	1,230
32	(주)우리홈쇼핑	20040480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길 10	1,143
33	(주)밸류마크	2011048016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63, 3층 진석빌딩 (서초동)	1,125
34	아이에프에이(주)	200702800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2길 14(역삼동, 중유빌딩)	1,100
35	메리츠금융서비스(주)	2009121179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3길 11, 본관10층1002호(역삼동, 광성빌딩)	1,021
36	(주)라이나금융서비스	201309803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8 (청진동)	982
37	한화라이프에셋(주)	2005048010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00 CTS기독교TV빌딩 5층	948
38	에이아이지어드바이저 주식회사	201205013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27층(여의도동, 서울국제금융센터 특아이에프씨)	893
39	다비엠앤에스(주)	2013020142	서울특별시 종구 마른내로 35 (초동, 동부화재보험빌딩)	753
40	(주)사랑모아금융서비스	201801800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32 901호 (범천동, 사랑모아빌딩)	735
41	한솔교육해피너스(주)보험대리점	2013028011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46 ,7층,8층,9층(논현동, 삼양빌딩)	718
42	(주)삼성금융호남보험대리점	200903801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3호(치평동, 제갈량빌딩)	709
43	(주)웰스플랜	1998019307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70 월드타워 8층 (상동)	699
44	(주)드림라이프	2007108015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57 치평동	678
45	엑셀금융서비스(주)	2017028020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로 101	673
46	이플러스금융판매(주)	2013110047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64,7층701호(인계동, 기아자동차수원빌딩)	605
47	키움에셋플래너주식회사	2003058232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24, 9층 (대치동, 사조빌딩)	601
48	디비금융서비스(주)	201401012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18 , 9층(역삼동, 나래빌딩)	572
49	(주)우리인슈맨라이프	200711108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83 비동 203호 (관양동, 디지털엠파이어)	569
50	메트라이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201605802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5 ,6층(삼성동, 본술빌딩)	557
51	(주)케이엠아이에셋	2005118591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044 성내빌딩 3층 (성내동)	557
52	(주)삼성금융경원보험대리점	2001108302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60, 12층 2호(인계동, 삼성생명빌딩)	531
53	(주)스카이블루에셋	2007121089	부산광역시 동구 조방로 14, 10층 1013호(범일동, 동일타워)	517
54	에이티에셋(주)	201307802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길 15 5층 502호	509
55	(주)더탑아이엔아이보험대리점	201202800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33 , 2층(양정동, 신흥빌딩)	506
56	비앤클	2016088005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파빌리온 217호	504
57	주식회사이네프로보험	2004118008	대구광역시 종구 국채보상로 561, 6층(포정동, 메리츠화재)	504

※ 2018.6월말 현재 소속 보험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법인 보험대리점

## 1. 상품설명의무 위반 및 자필서명 미이행

- A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8명은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 상품이 **금리연동형 상품**임에도 **3.75%**의 **확정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등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보험계약자로부터 **빈 청약서에 서명만**을 받은 후 보험계약내용을 기재하여 청약서를 작성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상품설명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함**

⇒ (제재조치)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 위반

- 보험대리점 : 과태료 부과(1천만원), 기관주의
- 임 원 : 주의적 경고
-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30일, 과태료 부과(5백만원~7.5백만원) 등

## 2. 허위로 작성된 보험안내자료 부당 사용

- B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6명은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경과기간별 해지환급률을 실제보다 높게 부풀린 허위 보험안내자료**<sup>\*</sup>를 **임의로 작성.사용**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안내**

\* 보험설계사 △△△은 지점장의 지위에 있던 자로 경과기간별 해지환급률을 실제보다 높게 작성한 허위 가입설계서(보험계약단계에서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를 **임의로 제작하여 보험모집에 사용하였고, 같은 소속의 보험설계사 5명도 이를 모집에 사용**

(예) 경과기간별 해지환급률 조작

: 10년(97.5% → 103.3%), 20년(107.7% → 149.8%), 30년(119.3% → 231.5%), 40년(132.3% → 300.1%)

⇒ (제재조치)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위반

- 보험대리점 : 과태료 부과(1억원)
-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업무정지 30일, 과태료 부과(1.4백만원~8.6백만원) 등

## 1. 보험안내자료 관련

### □ 보험업법 제95조(보험안내자료)

- ①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이하 "보험안내자료"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적어야 한다.
1.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또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이름·상호나 명칭
  2. 보험 가입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주요 사항
  3. 보험약관으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
  - 3의2.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
  4.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5.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관련 하위 법규

- 보험업법시행령 제33조의2(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
-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보험안내자료의 기재사항 등)
-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보험안내자료의 관리)

## 2. 상품설명서 관련

### □ 보험업법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 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②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보험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련 하위 법규

-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2(설명의무의 중요 사항 등)
-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
-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보험상품의 공시 등)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1조(보험안내자료 등의 기재사항)
- 보험협회 상품공시 시행세칙

### 3. 부당 승환계약 관련

####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이 조에서 "기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 4. 3개 이상 보험상품 비교설명 관련

#### □ 보험업법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④ 보험대리점의 구분, 등록요건, 영업기준 및 영업보증금의 한도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련 하위 법규

- 보험업법시행령 제33조의2(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 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

### 5. 보험대리점 공시 관련

#### □ 보험업법 제87조의3(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②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상 주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관련 하위 법규

- 보험업법시행령 제33조의4(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 보험업감독규정 제4-12조(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 등)